

## 김제시리·동이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기안 번호	2002-74
----------	---------

김제시리·동이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의 “리·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”를 “리·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”로 하고, 동조제6항을 “리·통장의 임기전에 해임된자는 6월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.”를 “리·통장중 임기전에 해임된 자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된자는 2년이내 재임명할 수 없다.”로 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)현재 임용된 리·통장은 잔여임기 장단에 불구하고, 임기 만료후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<b>제3조(리·통장의 임명)</b>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리·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보충된 리·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⑥ <u>리·통장의 임기전에 해임된 자는 6월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.</u></p>	<p><b>제3조(리·통장의 임명)</b>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리·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-----</u> -----</p> <p>⑥ <u>리·통장중 임기전에 해임된 자 또는 임기만으로 퇴직된 자는 2년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.</u></p>